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2.5.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5월 8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5월 1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선우근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「공무원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위 규칙을 삽입하고,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 시에 여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제4호에서는 “ ‘ 「공용차량관리 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’ 은 없는 것으로 본다” 를 “ ‘ 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은’ 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제4조 및 별표 1로’ 본다” 로 개정함.

(2) 안 제6조(시행규칙)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

(3) 그 밖에 전체적으로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조례상에서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의 내용을 삽입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할 때 여비 지급 및 이에 따른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,

법조문을 어문 규범에 맞게 전체적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